

| | |
|--------------|----------------|
| 의안번호 | 제 681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81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개정
- 도시·군계획 안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조문 개정(안 제6조의2, 제7조, 제14조)
- 사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1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및 용어 정비 등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7조의2,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으로, “시행령(이하“영”이
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2조제4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4일전”을 “14일 전”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을 “법 제52조의2제
1항제3호”로, “도시·군계획조례”를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도 내”를 “도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4일전”을 “14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배포일로부터”를 “배포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회의중”을 “회의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요청일로부터”를 “요청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요된”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위원장은 시·군의 도시·군계획 안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요하는”을 “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이상 14명이하”를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 하는”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p> |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p> |
| <p>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p> | <p>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u>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1. 2. (생략) ②·③ (생략)</p> <p>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u>소요되는</u>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2. 3. (생략)</p> <p>4. 제1호 및 제2호에 <u>소요되는</u>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p> <p>5. (생략)</p> | <p>----- ----- . <단서 삭제></p> <p>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u>드는</u>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2. 3. (현행과 같음)</p> <p>4. 제1호 및 제2호에 <u>드는</u>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p> <p>5.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p> <p>⑦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u>도내</u>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회의운영) ① (생략)</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 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u>14일전</u>까지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위원은 심의안건 <u>배포일로부터</u>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p> | <p>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u>도내</u>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 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u>개의(開議)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u>14일 전</u>까지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위원은 심의안건 <u>배포일</u>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서 안전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이 안전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생략)</p> <p>⑦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u>회의중</u>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p>⑧ ~ ⑩ (생략)</p> <p>⑪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u>요청일로부터</u>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u>소요된</u> 기간, 신청 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⑫ (생략)</p> <p><u><신설></u></p> | <p>안전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이 안전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u>회의 중</u>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p>⑧ ~ ⑩ (현행과 같음)</p> <p>⑪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u>요청일부터</u>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u>드는</u> 기간, 신청 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⑫ (현행과 같음)</p> <p>⑬ <u>위원장은 시·군의 도시·군계획 안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사전자문</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장기간 치료를 <u>요하는</u>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4. (생략) <p>②·③ (생략)</p> <p>제14조(분과위원회)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u>영 제13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u>), 법 제9조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획과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p><u>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장기간 치료를 <u>할 필요가 있는</u>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4. (현행과 같음)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u>단서 삭제</u>>, 법 제9조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획과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 현 행 | 개 정 안 |
|--|--|
| <p>2.·3. (생 략)</p> <p>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u></p> <p>④ <u>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생 략)</p> <p>제15조(공동위원회) ① <u>법 제30조 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u>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u>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이 <u>3분의1</u> 이상 이어야 한다.</u></p> <p>③ (생 략)</p> <p>④ <u>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u></p> | <p>2.·3. (현행과 같음)</p> <p>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u></p> <p>④ <u>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開議)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공동위원회) ① <u>법 제30조 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u>위원 중에서</u></u>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u>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이 <u>3분의 1</u> 이상 이어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開議)하</u></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p><u>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 <p>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u>사무관이 된다.</u></p> | <p>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u>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u></p> |
| <p>③ (생략)</p> |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u>위원에 대하여는</u>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p>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u>위원에게</u>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p>②·③ (생략)</p> |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시·군계획 안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비용 발생 요인

- 사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안전검토 등에 대한 수당 지급

3. 관련조문

- 회의운영(안 제1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원 수당지급 기준

| 구분 | 수당내역 | 수당 지급액 | 비고 |
|-----|---------|---------|----------------------------------|
| 위 원 | 출석수당 | 100천원/일 | 2시간 초과 시 30천원 추가 |
| | 안전검토 수당 | 30천원/건 | 100쪽 초과 20천원 추가, 300쪽 초과 40천원 추가 |

※ 원거리 출석수당 : 편도 이동거리 50km를 초과한 위원에게 추가 지급
50km~100km이내 : 30천원, 100km~200km이내 : 50천원, 200km이내 : 70천원

- 산출근거

- 위원 회의 참석 출석수당 100천원×6명×2회 = 1,200천원
- 위원 안전검토 수당(서면회의시) 50천원×6명×2회 = 600천원

- 부담비율 : 일반회계 [도 100%]

나. 추계 결과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800천원씩 향후 5년간 9,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일반회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1년) | 2차년도 ('22년) | 3차년도 ('23년) | 4차년도 ('24년) | 5차년도 ('25년) | 계 |
|----------|------------|-----------------|-----------------|-----------------|-----------------|-----------------|-------|
| 세 입 | | - | - | - | - | - | - |
| 세 출 | | | | | | | |
| 위원 수당 |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9,000 |
| 재원 조달 |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9,000 |
| 의존 재원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도비 일반회계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9,000 |
| 시·군비 | | -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 | - |

※ 부담비율 : 도비 100%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이제승

관련법령 발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 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21.1.12. 개정, 2021.7.13. 시행>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제114조(운영 세칙)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2 (생략)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와 관련한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

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14. 1. 14.>
 2. 삭제 <2009. 8. 5.>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 <2014. 1. 14.>
- ② 삭제 <2006. 6. 7.>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